

2009. 9.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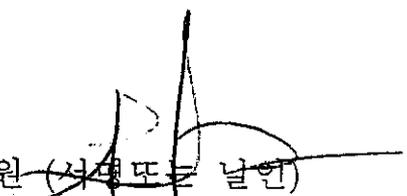
수 신 : 제천시의회회장

제 목 :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발의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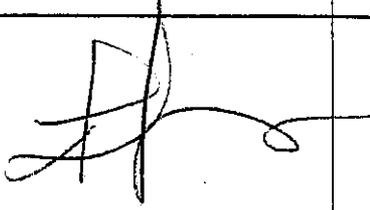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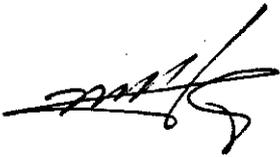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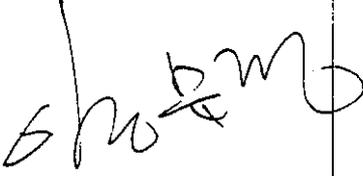
붙 임 1. 발의의원 서명서 1부.

2.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부.

발의자 : 박성하 의원  (서명 또는 날인)

외 4인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안발의서명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박소라		
김봉우		
이경임	이경임	
양순경		
조각희	조각희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371
------	------

발의연월일 : 2009. 7. 1 .

발 의 자 : 박성하 의원의 4인

1. 제안이유

- 최근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과거의 시대적 상황으로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많은 노인들이 근로능력과 의욕은 있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인 소외 속에서 외롭게 여생을 보내고 있는 상당수의 노인층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노인들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의 발굴로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2조)
-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노인 일자리 사업추진에 관한 사무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내지 제 7조)
- 노인 일자리 사업추진 절차, 지도감독,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내지 제10조)

3. 의견수렴

- 방 법 :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및 제천시 홈페이지게재
- 기 간 : 2009. 7. 31 ~ 8. 20(20일간)
- 의견제출자
 - 제천시장(사회복지과장)
 - (사)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장(중앙로2가 26-1번지)
- 주요내용 및 검토결과 : 별첨

4. 관계법령 :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
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
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고용과 소득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
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붙 임 :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부. 끝.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인 일자리 창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역의 기관·단체와 기업체 등에게 노인 일자리 마련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설치 및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에 따른 필요한 자료를 관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및 요청을 받은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매년 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위탁)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제천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로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 지속가능성, 사업수행실적 등을 심의하여 위탁 법인 또는 기관·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
2.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기타 사업목적에 위반하였을 경우

제8조(사업참여자의 모집 등)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계공무

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 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탁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중 발생하는 재해·사상 등 사고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9. 8.

-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
의견수렴 검토결과보고

담당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발의의원	결
김승	홍인숙		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조례안 의견수렴 검토결과

○ 관련조례 :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 의견수렴개요

- 방법 :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및 제천시 홈페이지게재
- 기간 : 2009. 7. 31 ~ 8. 20(20일간)

○ 의견제출자

- 제천시장(사회복지과장)
- (사)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장(중앙로2가 26-1번지)

○ 주요내용

- 제3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적극 지원한다.” 신설
- 제4조 “시장은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설치 및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제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중 공원가꾸기, 하천관리, 주차장관리, 방역 및 청소, 산림보호 등 노인들이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노인단체에 위탁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 제5조 “지속가능성 등”을 “지속가능성, 사업수행실적 등”으로 수정
- 제8조 “참가취소”를 “참가철회”로 수정

○ 검토결과

조례안	제출의견	검토결과	비고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② <신설>	②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적극 지원한다.	【의견 반영】	(사)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 ⑥ <신설>	⑥ 시장은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설치 및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제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중 공원가꾸기, 하천관리, 주청소, 산림보호 등 노인들이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노인단체에 위탁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의견 미반영】 □ 사회복지과 의견 ○ 조례안 제5조(사무위탁) 제1항에 「시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 같은조 제2항에 「제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제천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로서 사업 목적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 지속 가능성등을 심의하여 위탁 법인 또는 기관·단체(이하 "수탁자" 라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 노인회에서 요구한 사업내용을 특정한 단체(노인)에 한정하는 것은 위 조 항에 배치됨은 물론 2009 노인일자리사업종합 안내서 20쪽의 사업수행 기관 선정방법 기준(수행기관 대상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에 적합치 아니하다고 사료됨.	(사)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p>□ 실무부서(5개) 의견 : 붙임 ○ 열거한 사무중 일부사무는 현실적으로 위탁이 불필요하거나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많고 ○ 노동의 강도가 심한 일도 있으며, 기계를 다룰수 있는 영역도 있으므로 노인단체에 위탁키는 곤란</p> <p>□ 종합검토의견 ○ 관련부서에서 규정상,업무성질상 위탁이 불필요하거나 특정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기 곤란한사무를 조례로 재정한다면, 재의요구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고, 또한 타조례와 배치될수 있으며, 단체상호간에도 경합을 초래하여 시정은 영에 장애가 될소지가 있으므로 ○ 특정사무를 위탁하는 내용은 미반영하되 조례안 제3조에 2항을 신설하여 ②시장은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설치 및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적극지원한다로 반영코자 함</p>	
<p>제5조(사무위탁) ①</p> <hr/>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제천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로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수행</p>	<p>제5조(사무위탁)</p> <hr/> <p>②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p>	<p>【의견 반영】 수탁자의 종합평가를 위하여 시 시행했던 사업수행실적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p>	<p>(사)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p>

<p>능력, 지속가능성 등 을 심의하여 위탁 법 인 또는 기관·단체 (이하"수탁자"라 한다) 를 선정하여야 한다.</p>	<p>---, 지속가능성, 사업 수행실적 등----- ----- -----</p>		
<p>제8조(사업참여자의 모집등) 노인일자리사 업 참여자모집, 선발 절차, 참가제한, 참가 취소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8조(사업참여자의 모집등)----- ----- -----참가 철회----- -----</p>	<p>【의견 미반영】 취소의 의미는 행정행위에서 는 철회와 구분될 수 있지만 민법상 통상 취소와 철회는 구별없이 쓰이기도 하고, 조례 안에서 취소의 의미는 사실행 위의 개념으로 사용되며, 타 자치단체조례에서도 취소로 사용되고 있는바 취소로 사용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p>	<p>제천시장</p>

(사)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위탁업무 관련 집행부 의견

부서명	단위사무명	부서(담당자)의견	비고
건설방재과 (하천팀 김한복팀장)	하천관리	[위탁불가] 청경2명이 상시 하천감시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교통과 (교통지도팀 권기병)	주차장관리	[위탁불가] 공영유료주차장 20개소(793면)에 대하여 공개경쟁을 통하여 입찰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노인회 등을 통하여 관리인력 확보운영	
산림공원과 (공원녹지팀 이용학팀장)	공원관리	[위탁불가] 공원내 시설물관리도 하여야 하므로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업무인바 조경업체에 1년 계약으로 공원환경정비 및 시설물관리 시행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 김정환팀장)	산림보호	[위탁불가] 산림보호업무에는 「산불예방 및 진화, 산사태 예방 및 복구,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불법형질변경, 불법굴채취 등 단속」 업무가 있는데 전문적인 식견이 요구될 뿐만아니라 육체적으로 힘든일이 많은바 노인단체에 위탁키는 곤란	
환경과 (생활환경팀 이진태)	청소	[위탁불가] 56명의 환경미화원 및 회망근로자(공공근로자)를 구간별로 배치하여 생활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음	
보건소 (예방의약팀 채한국)	방역	[위탁불가] 방역관련 인건비가 없을 뿐만아니라 방역약품을 다뤄야하며, 세심함이 요구되는 방역장비, 휴대용방역기를 어깨에 메고다녀야하는 등 강도 높은 노동력이 요구됨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인 일자리 창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역의 기관·단체와 기업체등에게 노인 일자리 마련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설치 및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적극 지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에 따른 필요한 자료를 관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협조·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및 요청을 받은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매년 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위탁)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제천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로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 지속가능성, 사업수행실적 등을 심의하여 위탁 법인 또는 기관·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
2.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기타 사업목적에 위반하였을 경우

제8조(사업참여자의 모집 등)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 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탁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중 발생하는 재해·사상 등 사고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2010년 제천시 노인일자리창출지원조례안



제 천 시



수신자 제천시의회(의회사무국장)

(경유)

제목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

1. 제천시의회 의회사무국 - 2879(2009. 8. 18)호와 관련됩니다.
2. 상기호와 관련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이 사회복지과로부터 접수 되었기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조례안명 :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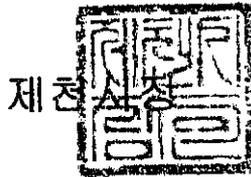
○ 노인회 신설(추가) 요구사항

시장은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설치 및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제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중 공원 가로가꾸기, 하천관리, 주차장관리, 방역 및 청소, 산림보호 등 노인들이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노인단체에 위탁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 검토 의견내용

- 조례안 제5조(사무위탁) 제1항에 「시장은 노인 일자리사업을 적법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 같은조 제2항에 「제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제천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로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 지속 가능성을 심의하여 위탁 법인 또는 기관·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 노인회에서 요구한 사업내용을 특정한 단체(노인)에 한정하는 것은 위 조항에 배치되는 물론 2009 노인일자리사업준행 안내서 20쪽의 사업수행기관 선정방법 기준(수행기관 대상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에 적합치 아니하다고 사료됨.

끝.



*지방행정주시 김시현 법무감사원장 강구 전략기획실장 진결 08/25
대결환율석

협조지 지방행정주시보 윤용태

시행 전략기획실-9238 (2009.08.25.) 접수 의회사무국-2962 (2009.08.25.)
우 390-701 충북 제천시 시청길 15(천남동 12-2번지) / <http://www.okjc.net>
전화 043)641-5531 / 전송 043)641-5499 / oxen6112@korea.kr / 공개

2009년 노인일자리사업 안내

- 2차 : 해당 시·군·구에서는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등 사업 계획에 대한 실질 심사 후 시·도가 최종심사 및 결과 통보
- 3차 : 개발원(지역사업본부)는 지자체 심사결과 확인 및 분석

○ 공공분야 신규사업 및 시장형, 인력파견형 사업

- 사업수행기관에서 사업계획을 전산등록하면 시·군·구(1차), 시·도(2차), 보건복지가족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최종 심사를 거쳐 결과 통보
- ※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시장형 및 인력파견형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원 지역사업본부에서 타당성 분석 등 실시예정
- ※ 창업모델형 및 경진대회(박람회 등) 사업계획은 별도 계획에 의해 심사

2. 사업수행기관 선정

가. 선정 방법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수행기관 및 프로그램 선정을 위해 사업신청 공고

※ '09년 예산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계속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경우 공고절차 등 생략 가능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기관은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서[서식 1-2-(6)]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사업선정 기준표[서식1-7]에 의해 심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사회복지관, 자원후견 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지방문화원, 지역NPO 등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 [서식]1-2]

○ 지침동보인 현재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기관(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에 의거, 별도 인정 가능)으로 한정

○ 수행기관 선정 시 수행능력 및 유사사업 추진 경험, 전담인력 유무 등 고려

※ 공익형의 경우 시·군·구청이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사정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운영 가능

“능동·능률·칭의로 14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제 천 시 의 회



수신자 제천시장(전략기획실장)

(경유)

제목 조례안(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사항 알림

1. 제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의회사무국-2680(2009.8.3)호와 관련하여 의원발의 조례안(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사)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에서 다음사항에 대한 신설(추가)요구 사항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3. 조례 제정시 각종사업을 추진(집행)하는 부서의 의견을 반영코지 하오니 2009. 8. 21(금)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신설요구 사항

입법예고 안	노인회 신설(추가)요구사항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시장은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설치 및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제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공원가꾸기, 하천관리, 주차장관리, 방역 및 청소, 산림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보호 등 노인들이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3.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에 대해서는 노인단체에 위탁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에 따른 필요한 자료를 관내 관련 법인 및 단체등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p>(4) 제3항에 따른 협조 및 요청을 받은 법인·단체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5) 시장은 매년 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 집행부서별 의견제출 사항 :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노인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불가한 사유

- 사업예시 : 공원가꾸기, 하천관리, 주차장관리, 방역 및 청소, 산림보호 등

붙임 :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부, 끝.

제천시의회



★ 지방행정수사보 김중문

전문위원

홍완식

의회사무국장

내경이상백

의정

06/13
김현상

협조자

시행 의회사무국-2879 (2009.06.18.) 접수 ()
 우 390-701 충북 제천시 시청길 15(천남동 12-2번지) / http://www.okjc.net
 전화 043)641-5966 /전송 043)641-5969 / kjm2589@korea.kr / 공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수신 :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전문위원

제목 :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제천시의회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 하오니 검토 하시고 반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전문위원	박미화
2018. 08. 14	2018	김영수
김영수	김영수	김영수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대표이사 김미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총무부장 : 박 미 화 사무국장 : 최 동 수 회장 : 이 상 근
 시행 : 대노 제천 108호 접수 :
 우 390-012 주소 : 제천시 중앙로2가 26-1/이메일 : pmhoa4339@hanmail.net
 전화 : (사) 043) 642-3130 (회) 642-8005 / 전송 : 043) 642-3130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2조(용어의 정의) 제 1호에서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라는 조문에서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사유 : 노인복지법 제 26조(경로우대), 제27조(건강진단) 등에서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하였음.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시책 추진과, 기관·단체와 기업체 등에게 노인 일자리 마련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라는 조문 다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적극 지원 한다. 는 조문 신설 요망.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에 시장은 노인 스스로 자립 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설치 및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제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공원가꾸기, 하천관리, 주차장관리, 방역 및 청소, 산림보호 등 노인들이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노인단체에 위탁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을 신설 요망.

제5조(사무의 위탁) 제2항의 조문에서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할 경우에는 제천시 소재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로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 지속 가능성 등을 ----- 선정 하여야 한다. 라는 조문에서 적정성 다음에 사업 수행 실적을 첨부 명시 요망.

제천시 2010제천시노년일자리사업예산서 2010.8.16-10.5



제천시



수신자 제천시의회(의회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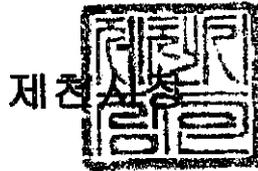
(경유)

제목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 제출

1. 사회복지과 - 44370(2009. 8. 13)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호와 관련하여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조례안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검토의견 》

- 조례안 제8조(사업참여자의 모집등)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선발절차, 참가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에서 참가취소를 참가철회로 하여야 함
- 변경사유
조례안 제7조(위탁의 취소)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위탁을 취소할 경우 노인일자리사업에 적법한 사유로 참가한 참여자에 대하여 참가취소를 할 경우 기근로한 부분의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치 못하는 사례가 예측되므로 기근로한 부분의 임금을 지급키 위해 참가철회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끝



★지방행정주시 김시현 지방행정주시 조완형 전략기획실장 전결 08/14 김석윤

협조자 지방행정주시보 윤용태

시행 전략기획실-8859 (2009.08.14.) 접수 의회사무국-2844 (2009.08.14.)
 우 390-701 충북 제천시 시청길 15(전남동 12-2번지) /http://www.okjc.net
 전화 043)641-5531 /전송 043)641-5499 / oxen6112@korea.kr / 공개

2010제천시장애인방문서비스 2010.9.16~10.5



제천시



수신자 전략기획실장
(경유)

제목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 제출

1. 전략기획실-8461(2009. 8. 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조례안 검토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검토의견》

- 조례안 제8조(사업참여자의 모집등)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선발절차, 참가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에서 참가취소를 참가철회로 하여야 함
- 변경사유
조례안 제7조(위탁의 취소)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위탁을 취소할 경우 노인일자리사업에 적합한 사유로 참가한 참여자에 대하여 참가취소를 할 경우 기근로한 부분의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치 못하는 사례가 예측되므로 기근로한 부분의 임금을 지급키 위해 참가철회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끝

사회복지과장

관인생략

★지방행정주사 이규철 경로복지팀장 한시주 사회복지과장 08/13 최남용

협조자

시행 사회복지과-44370 (2009.08.13.) 접수 전략기획실-8838 (2009.08.14.)
우 390-701 충북 제천시 청전동 110 / http://www.ckjc.net
전화 043)641-5711 /전송 043)641-5689 / test@okjc.net / 공개

“능동·능률·장의로 14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제 천 시 의 회



수신자 제천시장(전략기획실장)

(경유)

제목 조례안 발의(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따른 관련부서 검토 협조

1. 제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2009. 8. 14(금)까지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명 :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박성하 의원

○ 협의사항

- 관련부서에서는 본조례안의 추진상 문제점 및 예산수반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 검토
- 도 관련부서 사전검토

붙임 :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부. 끝.

제천시의회



지방행정수시보 김종문

전문위원

홍완식

의회사무국장

지선대

의장

08/03
강현삼

협조자

시행 의회사무국-2680

(2009.08.03.) 접수

우 390-701 충북 제천시 시청길 15(전남동 12-2번지)

/ http://www.okjc.net

전화 043)641-5966

/전송 043)641-5969

/ kjm2589@korea.kr

/ 공개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의원발의(박성하 의원 주도)로 제정코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규정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꼭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안명 :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최근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과거의 시대적 상황으로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많은 노인들이 근로능력과 의욕은 있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 속에서 외롭게 여생을 보내고 있는 상당수의 노인층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나. 이러한 노인들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의 발굴로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에게 근로와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2조)

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노인 일자리 사업추진에 관한 사무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내지 제 7조)

라. 노인 일자리 사업추진 절차, 지도감독,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내지 제10조)

4. 자치법규 안 : 붙임참조

5. 의견수렴기간 : 2009. 7.31.(금) ~ 2009. 8.20.(목)(20일간)

6. 의견제출 기재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7. 의견 제출 방법

가. 우편(390-701 충북 제천시 시청길15(천남동12-2) 제천시의회)
팩스(043-641-5696),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함께하는 의정> 자유게시판 게재 등

※ 연락처

- 박성하 의원 : 043-641-5901

- 자치행정전문위원 홍완식 : 043-641-5962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의회
소식> 공지사항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등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들이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인 일자리 창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역의 기관·단체와 기업체등에게 노인 일자리 마련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에 따른 필요한 자료를 관내 관련 법인 및 단체등에 협조·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 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탁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중 발생하는 재해·사상등 사고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제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